

# 제천시 옥외광고물 등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 번호	1094
----------	------

제출년월일 : 2006. 8. .

제 출 자 : 제 천 시 장

## 1. 제안이유

-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시행령」 개정에 따라 옥외광고업의 등록에 필요한 시설 기준의 강화 및 옥외광고업의 휴·폐업과 업무 재개에 대한 과태료 부과기준이 시·군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됨에 따라 제천시 옥외광고물 등 관리조례를 개정하고자 함.

## 2. 주요내용

- 옥외광고업이 신고제에서 등록제로 변경됨에 따른 시설 기준 제시 (안 제32조)

## 3. 근거법령

-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 2006. 8. 4, 대통령령 제19639호]

## 4. 의안전문 : 붙임

## 5. 신·구조문 대비표 : 붙임

붙임 1. 근거법령(발췌분) 1부.

2. 시·군 옥외광고물 관리조례 표준안 공문 사본 1부.

- 충청북도 지역개발과-6913호(2006. 7. 3)

3. 입법예고문 사본 1부.

## 제천시 옥외광고물 등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천시 옥외광고물 등 관리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2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32조(옥외광고업의 등록 기준 등) ①법 제11조제1항 전단 및 시행령 제41조제1항에 의하여 옥외광고업을 하고자 하는 자는 별표 1의 2에 의한 시설기준을 갖추어야 한다.

②시장은 영 제41조제2항 및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옥외광고업의 등록 또는 변경등록을 수리한 때에는 영 제41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옥외광고업자 관리대장에 이를 기록·관리하여야 한다.

별표 1 내지 별표 6을 별지와 같이 한다.

별지 제1호 서식 내지 별지 제9호 서식을 별지와 같이 한다.

별지 제10호 서식을 삭제 한다.

별지 제11호 서식 내지 별지 제15호 서식을 별지와 같이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1】

옥외광고업 종사자에 대한 교육의 종류·내용 및 시간(제33조제1항 관련)

종 류	교육 시간	교 육 내 용	교육대상	비 고
신규교육	6시간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관계법규 - 3시간 (옥외광고물등관리법, 건축법, 도시계획법, 도로법 등)</li> <li>○ 표시에 관한 사항 - 3시간 (색채, 재료, 구조, 제작, 시공, 도시미관, 안전 등)</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신규로 옥외광고업에 종사하고자 하는 자</li> <li>※ 필요시 종업원도 실시</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옥외광고업자에 대한 교육이 없는 경우는 광고업 신고후 최초로 실시하는 교육을 받아야 함</li> </ul>
행정처분에 의한 교육	3시간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관계법규(옥외광고물등관리법, 건축법, 도시계획법, 도로법 등)</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법에 의하여 행정처분을 받은 옥외광고업자</li> </ul>	
보수교육	3시간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관계법규 (옥외광고물등관리법, 건축법, 도시계획법, 도로법 등)</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옥외광고업자 (대표자)</li> <li>※ 필요시 종업원도 교육 실시</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관계법령의 제개정시 실시</li> </ul>
기타교육	별도 정함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세부 교육시간, 교육내용, 교육대상 등은 위원회 심의를 거쳐 시장이 정하여 공고</li> </ul>		

【별표 1의 2】

옥외광고업의 시설 기준(제32조 제1항 관련)

지역	시 설 기 준	
	옥외광고제작업	옥외광고대행업
제천시 전지역	사무실을 포함한 연면적9.9㎡이상의 작업장 확보	연면적6.6㎡이상의 사무실확보

【별표 2】

옥외광고물등의 표시허가·신고수수료(제35조제1항 관련)

가. 일반옥외광고물

광고물종류	구분	단위	기 준	수수료
1. 가로형간판 가. 일반가로형간판 (나함외의 간판) 나. 건물 측후면의 4층이상 판류이용간판 (영 제15조제4호)		개	·6제곱미터이하 ·6제곱미터초과시 1제곱미터당 가산	3,000 1,000
		개	·20제곱미터이하 ·20제곱미터초과시 1제곱미터당 가산	30,000 2,000
2. 세로형간판		개	·6제곱미터이하 ·6제곱미터초과시 1제곱미터당 가산	2,000 1,000
3. 돌출간판		개	·3.5제곱미터이하 ·3.5제곱미터초과시 1제곱미터당 가산 ·아미용업소 및 의료기관약국 표지등	15,000 1,000 4,000
4. 공연간판 가. 벽면이용간판 나. 지주이용간판		개	·가로형간판 가함과 같음	
		개	·지주이용간판과 같음	
5. 옥상간판		개	·10제곱미터이하 ·10제곱미터초과시 1제곱미터당 가산	35,000 5,000
6. 지주이용간판		개	·10제곱미터이하 ·10제곱미터초과시 1제곱미터당 가산	15,000 2,000
7. 애드벌룬 가. 공중에 띄는 것 나. 옥상에 고정하여 설치 하는 것 다. 지면에 설치하는 것		개	·옥상간판에 준함	15,000
		개	·지주이용간판에 준함	
		개		

34 [제128회 임시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 부록]

광고물종류	구분	단위	기 준	수수료
8. 공공시설물이용 광고물				
가. 일반공공시설물	개		·1제곱미터이하 ·1제곱미터초과시 1제곱미터당 가산	3,000 1,000
나. 전주가로등주	개		·10개이하 ·10개초과시 5개당 가산	4,000 2,000
9. 교통시설(지하도)이용 광고물	개		·5제곱미터이하 ·5제곱미터초과	9,000 10,000
10. 교통수단이용 광고물				
가. 비행선	대			400,000
나. 비행기선박 양측면	대			10,000
다. 차량 양측면	대			2,000
11. 선전탑	개			4,000
12. 아취광고물	개			4,000
13. 창문이용 광고물	개			4,000
14. 현수막				
가. 현수막	개		·10제곱미터이하 ·10제곱미터초과시 1제곱미터당 가산	3,000 1,000
나. 현수막 게시시설	개		·10제곱미터이하 ·10제곱미터초과시 1제곱미터당 가산	7,000 1,500
15. 벽보	매		·50매당	3,000
16. 전단	매		·1,000매당	3,000
17. 광고물등중 전기를 이용하는 경우 (백열등이나 형광등을 이용하여 조명을하는 광고물 제외)	개		해당종류의 광고물 수수료의 2배 적용	

나. 특별법에 의한 광고료

광고물종류	구분	단위	기 준	수수료
1. 시내시의전세버스 외부광고		대		2,000
2. 영업용 화물자동차 외부광고		대		1,500
3. 영업용택시광고		대		1,000
4. 차량탑재 영상광고		대		350,000
5. 공중전화부스이용광고		개	·1제곱미터이하 ·1제곱미터초과시 1제곱미터당 가산	3,000 1,000
6. 축구조형물광고		개	·10제곱미터이하 ·10제곱미터초과시 1제곱미터당 가산	15,000 2,000
7. 홍보탑광고		개		20,000
8. 벽면이용광고		개	·20제곱미터이하 ·20제곱미터초과시 1제곱미터당 가산	30,000 2,000
9. 깃발이용광고		개	·10개이하 ·10개초과시 5개당 가산	4,000 2,000

**【별표 3】**

**옥외광고물등 안전도검사 수수료(제35조제1항 관련)**

광고물등의 종류 (게시시설 포함)	적 용 기 준	수수료
1. 옥상간판	·연면적 50제곱미터미만 ·연면적 50제곱미터이상 70제곱미터미만 ·연면적 70제곱미터이상은 1제곱미터당 가산	21,000 38,000 1,300
2. 광고물 상단의 높이가 지면으로부터 5미터이상이고 1면의 면적이 1제곱미터이상인 돌출간판	·연면적 3.5제곱미터미만 ·연면적 3.4제곱미터이상 10제곱미터미만 ·연면적 10제곱미터이상은 1제곱미터당 가산	14,000 20,000 1,600
3. 건물 4층 이상에 설치하는 가로형간판	·면적 6제곱미터미만 ·면적 6제곱미터이상 20제곱미터미만 ·면적 20제곱미터이상은 1제곱미터당 가산	14,000 20,000 800
4. 지면으로부터의 높이가 4미터 이상인 지주이용간판	·연면적 10제곱미터미만 ·연면적 10제곱미터이상 20제곱미터미만 ·연면적 20제곱미터이상은 1제곱미터당 가산	14,000 20,000 800
5. 영 제23조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4미터이상의 게시시설을 이용하여 설치하는 애드빌론 가. 옥상에 고정하여 설치하는 것 나. 지면에 설치하는 것	· 옥상간판에 준함 · 지주이용간판에 준함	
6. 현수막 게시시설	·연면적 30제곱미터이상 40제곱미터미만 ·연면적 40제곱미터이상은 1제곱미터당 가산	11,000 600
7. 기타 안전도 검사대상 광고물	·같은 유형의 광고물등에 준함	

【별표 4】

옥외광고업 신고수수료(제35조제1항 관련)

구 분	단 위	수 수 료 (원)	관련법규	비고
신 규	업 소 당	15,000	법 제17조제3항	
변 경	업 소 당	7,500	법 제17조제3항	

※ 옥외광고업의 변경신고사항중 다음의 경우에는 수수료의 납부를 면제한다.  
(영 제41조제3항)

- (1) 관할구역내에서 주소를 변경한 때
- (2) 업소명을 변경한 때

【별표 5】

과태료 부과기준(제37조제1항 관련)

위 반 사 항	과 태 료	세 구 지 역	균 지 역
1. 법 제3조의 규정에 위반하여 입간판·현수막·벽보·전단을 표시한 자			
가. 입간판			
(1) 도로(보도를 포함한다)에 설치한 경우			
(가) 연면적 1제곱미터 미만	· 5만원 이상 20만원 미만	8만원	7만원
- 0.5제곱미터 이하		13만원	10만원
- 0.6~0.8제곱미터 이하		19만원	15만원
- 0.9~1.0제곱미터 미만			
(나) 연면적 1제곱미터 이상 2제곱미터 미만	· 20만원 이상 40만원 미만	25만원	20만원
- 1.0~1.3제곱미터 이하		30만원	25만원
- 1.4~1.6제곱미터 이하		39만원	35만원
- 1.7~2.0제곱미터 미만			
(다) 연면적 2제곱미터 이상 3제곱미터 미만	· 40만원 이상 80만원 미만	45만원	40만원
- 2.0~2.3제곱미터 이하		60만원	55만원
- 2.4~2.6제곱미터 이하		79만원	70만원
- 2.7~3.0제곱미터 미만			
(라) 연면적 3제곱미터 이상	· 80만원에 3제곱미터 초과면적의 0.5제곱미터당 10만원을 가산한 금액 이하	80만원 +10만원	80만원 +10만원
(2) 그밖의 지역·장소에 설치한 경우			
(가) 연면적 1제곱미터 미만	· 3만원 이상 10만원 미만	5만원	4만원
- 0.5제곱미터 이하		7만원	6만원
- 0.6~0.8제곱미터 이하		9만원	8만원
- 0.9~1.0제곱미터 미만			
(나) 연면적 1제곱미터 이상 2제곱미터 미만	· 10만원 이상 30만원 미만	15만원	10만원
- 1.0~1.3제곱미터 이하		20만원	15만원
- 1.4~1.6제곱미터 이하		29만원	25만원
- 1.7~2.0제곱미터 미만			
(다) 연면적 2제곱미터 이상 3제곱미터 미만	· 30만원 이상 50만원 미만	35만원	30만원
- 2.0~2.3제곱미터 이하		40만원	35만원
- 2.4~2.6제곱미터 이하		49만원	45만원
- 2.7~3.0제곱미터 미만			
(라) 연면적 3제곱미터 이상	· 50만원에 3제곱미터 초과면적의 0.5제곱미터당 5만원을 가산한 금액 이하	50만원 +5만원	50만원 +5만원

위 반 사 항	과 태 료	사 규 징 액	균 지 액
<b>나. 현수막</b>			
<b>(1) 벽면이용 현수막의 경우</b>			
(가) 면적 3제곱미터 미만	·5만원 이상 10만원 미만	5만원	5만원
- 1.0제곱미터 이하			
- 1.1~2.0제곱미터 이하			
- 2.1~3.0제곱미터 미만	9만원	8만원	
(나) 면적 3제곱미터 이상 5제곱미터 미만	·10만원 이상 20만원 미만	13만원	10만원
- 3.0~3.7제곱미터 이하			
- 3.8~4.4제곱미터 이하			
- 4.5~5.0제곱미터 미만	19만원	15만원	
(다) 면적 5제곱미터 이상 10제곱미터 미만	·20만원 이상 50만원 미만	25만원	20만원
- 5.0~6.0제곱미터 이하			
- 6.1~8.0제곱미터 이하			
- 8.1~10.0제곱미터 미만	45만원	35만원	
(라) 면적 10제곱미터 이상	·50만원에 10제곱미터 초과면적의 1제곱미터당 10만원을 가산한 금액 이하	+10만원	+10만원
<b>(2) 지주지정계시대이용 현수막의 경우</b>			
(가) 연면적 3제곱미터 미만	·5만원 이상 10만원 미만	5만원	5만원
- 1.0제곱미터 이하			
- 1.1~2.0제곱미터 이하			
- 2.1~3.0제곱미터 미만	9만원	8만원	
(나) 연면적 3제곱미터 이상 5제곱미터 미만	·10만원 이상 20만원 미만	13만원	10만원
- 3.0~3.7제곱미터 이하			
- 3.8~4.4제곱미터 이하			
- 4.5~5.0제곱미터 미만	19만원	15만원	
(다) 연면적 5제곱미터 이상 10제곱미터 미만	·20만원 이상 50만원 미만	25만원	20만원
- 5.0~6.0제곱미터 이하			
- 6.1~8.0제곱미터 이하			
- 8.1~10.0제곱미터 미만	45만원	35만원	
(라) 연면적 10제곱미터 이상	·50만원에 10제곱미터 초과면적의 1제곱미터당 10만원을 가산한 금액 이하	+10만원	+10만원
<b>(3) 그 밖의 종류의 현수막의 경우</b>			
(가) 면적 3제곱미터 미만	·5만원 이상 10만원 미만	5만원	5만원
- 1.0제곱미터 이하			
- 1.1~2.0제곱미터 이하			
- 2.1~3.0제곱미터 미만	9만원	8만원	

40 【제128회 임시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 부록】

위 관 사 항	과 태 료	시·구지역	군지역
(나) 면적 3제곱미터 이상 5제곱미터 미만 - 3.0~3.7제곱미터 이하 - 3.8~4.4제곱미터 이하 - 4.5~5.0제곱미터 미만	· 10만원 이상 20만원 미만	12만원 15만원 18만원	10만원 14만원 16만원
(다) 면적 5제곱미터 이상 10제곱미터 미만 - 5.0~6.0제곱미터 이하 - 6.1~8.0제곱미터 이하 - 8.1~10.0제곱미터 미만	· 20만원 이상 50만원 미만	25만원 35만원 45만원	20만원 30만원 35만원
(라) 면적 10제곱미터 이상	· 50만원에 10제곱미터 초과면적의 1제곱미터당 10만원을 가산한 금액 이하	50만원 +10만원	50만원 +10만원
(4) (1) 내지 (3)의 현수막을 설치하여 차량통행이나 일반인의 보행을 현저히 방해한 때	· 해당 과태료의 2배까지 초과		
다. 벽보	· 장당 5천원 이상 3만원 이하		
(1) 일반 광고내용 - 1~10장이하 - 11~20장이하 - 21장이상		장당10천원 장당15천원 장당25천원	장당10천원 장당13천원 장당20천원
(2) 법 제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광고내용 - 1~10장이하 - 11~20장이하 - 21장이상		장당15천원 장당20천원 장당30천원	장당10천원 장당18천원 장당22천원
라. 전단	· 장당 3천원 이상 3만원 이하		
(1) 일반 광고내용 - 1~10장이하 - 11~20장이하 - 21장이상		장당5천원 장당10천원 장당15천원	장당5천원 장당8천원 장당10천원
(2) 법 제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광고내용 - 1~10장이하 - 11~20장이하 - 21장이상		장당15천원 장당20천원 장당30천원	장당10천원 장당18천원 장당22천원
2. 법 제11조제2항에 따른 옥외광고업의 휴·폐업 또는 업무재개에 관한 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가. 30일미만 나. 30일 이상 90일미만 다. 90일 이상 180일미만 라. 180일 이상 1년미만 마. 1년이상	· 10만원 이상 30만원 미만 · 30만원 이상 50만원 미만 · 50만원 이상 100만원 미만 · 100만원 이상 200만원 미만 · 200만원 이상 300만원 이하	15만원 40만원 70만원 130만원 240만원	10만원 30만원 50만원 100만원 200만원
3. 법 제12조제2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교육을 이수하지 아니한 자 가. 연 1회 위반자 나. 연 2회 위반자 다. 연 3회 이상 위반자	· 10만원 이상 30만원 미만 · 30만원 이상 50만원 미만 · 50만원 이상 100만원 이하	25만원 45만원 100만원	25만원 45만원 100만원

※ 과태료 금액의 계산방법

- (1) 과태료 산정은 광고물의 표시면적을 기준으로 하되, 지주는 제외하고 게시물(광고물의 테두리)의 면적은 포함한다.
- (2) 광고물의 표시면적 산정은 소수점이하까지 계산하되, 계산된 총금액에서 1천원 미만은 절사한다.
- (3) 입체형·모형 등 변형된 광고물의 표시면적 산정은 최대 외각선을 사각형으로 가상 연결한 면적 또는 단면적의 70퍼센트에 면수를 적용한다.
- (4) 입간판 중 전기를 이용하여 단순조명을 하는 광고물 등은 해당 과태료의 1.5배를 적용하고, 네온류 또는 전광류 등을 이용하여 표시한 광고물 등은 해당 과태료의 2배를 적용한다. 다만, 광고물 등의 일부가 전기를 이용하는 경우에는 과태료 산정금액에 전기이용 부분의 비율에 해당하는 금액을 가산한다.
- (5) 최초 1년 이내에 반복·상습적으로 법을 위반하여 광고물 등을 표시한 자에 대하여는 300만원 이하의 범위 안에서 직전 과태료 부과금액의 30퍼센트를 가산하여 부과할 수 있다.

【별표 6】

이행강제금 부과기준(제38조제1항 관련)

위 반 사 항	이 행 강 제 금	금 액
<p>1. 가로형 간판, 세로형간판, 공연간판</p> <p>가. 면적 5제곱미터 미만                      ·2.0제곱미터 이하                      ·2.1~3.0제곱미터 이하                      ·3.1~4.0제곱미터 이하                      ·4.1~5.0제곱미터 미만</p> <p>나. 면적 5제곱미터이상 10제곱미터 미만                      ·5.0~6.0제곱미터 이하                      ·6.1~7.0제곱미터 이하                      ·7.1~8.0제곱미터 이하                      ·8.1~9.0제곱미터 이하                      ·9.1~10.0제곱미터 미만</p> <p>다. 면적 10제곱미터 이상 20제곱미터 미만                      ·10 ~12제곱미터 이하                      ·12.1~14제곱미터 이하                      ·14.1~16제곱미터 이하                      ·16.1~18제곱미터 이하                      ·18.1~20제곱미터 미만</p> <p>라. 면적 20제곱미터 이상</p>	<p>· 20만원 이상 50만원 미만</p> <p>· 50만원 이상 100만원 미만</p> <p>· 100만원 이상 200만원 미만</p> <p>200만원에 20제곱미터 초과 면적의 1제곱미터당 9만원을 가산한 금액</p>	<p>20만원 30만원 40만원 45만원</p> <p>55만원 65만원 75만원 85만원 95만원</p> <p>110만원 130만원 145만원 165만원 185만원</p> <p>200만원 + 9만원</p>
<p>2. 돌출간판</p> <p>가. 연면적 5제곱미터 미만                      ·2.0제곱미터 이하                      ·2.1~3.0제곱미터 이하                      ·3.1~4.0제곱미터 이하                      ·4.1~5.0제곱미터 미만</p> <p>나. 연면적 5제곱미터 이상 10제곱미터 미만                      ·5.0~6.0제곱미터 이하                      ·6.1~7.0제곱미터 이하                      ·7.1~8.0제곱미터 이하                      ·8.1~9.0제곱미터 이하                      ·9.1~10.0제곱미터 미만</p>	<p>· 20만원 이상 50만원 미만</p> <p>· 50만원 이상 100만원 미만</p>	<p>20만원 30만원 40만원 49만원</p> <p>55만원 65만원 75만원 85만원 95만원</p>

위 반 사 항	이 행 강 제 금	금 액
다. 연면적 10제곱미터 이상 20제곱미터 미만 ·10.0~12.0제곱미터 이하 ·12.1~14.0제곱미터 이하 ·14.1~16.0제곱미터 이하 ·16.1~18.0제곱미터 이하 ·18.1~20.0제곱미터 미만	·110만원 이상 200만원 미만	110만원 130만원 150만원 170만원 190만원
라. 연면적 20제곱미터 이상	·200만원에 20제곱미터 초과 면적의 1제곱미터당 9만원을 가산한 금액	200만원 + 9만원
3. 지주이용 간판, 지면에 설치하는 애드벌룬		
가. 연면적 3제곱미터 미만 ·0.5제곱미터 이하 ·0.6~1.0제곱미터 이하 ·1.1~2.0제곱미터 이하 ·2.1~3.0제곱미터 미만	·30만원 이상 50만원 미만	30만원 35만원 40만원 48만원
나. 연면적 3제곱미터 이상 5제곱미터 미만 ·3.0~3.5제곱미터 이하 ·3.6~4.0제곱미터 이하 ·4.1~4.5제곱미터 이하 ·4.6~5.0제곱미터 미만	·50만원 이상 100만원 미만	55만원 65만원 80만원 95만원
다. 연면적 5제곱미터 이상 10제곱미터 미만 ·5.0~6.0제곱미터 이하 ·6.1~7.0제곱미터 이하 ·7.1~8.0제곱미터 이하 ·8.1~9.0제곱미터 이하 ·9.1~10제곱미터 미만	·100만원 이상 200만원 미만	110만원 130만원 150만원 170만원 190만원
라. 연면적 10제곱미터 이상	·200만원에 10제곱미터 초과 면적의 1제곱미터당 9만원을 가산한 금액	
4. 옥상간판, 옥상에 고정하여 설치하는 애 드벌룬, 건물 4층이상 벽면에 표시하는 가로형 간판		
가. 연면적 5제곱미터 미만 ·2.0제곱미터 이하 ·2.1~3.0제곱미터 이하 ·3.1~4.0제곱미터 이하 ·4.1~5.0제곱미터 미만	·30만원 이상 50만원 미만	30만원 35만원 40만원 48만원

44 【제128회 임시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 부록】

위 반 사 항	이 행 강 제 금	금 액
나. 연면적 5제곱미터 이상 10제곱미터 미만 ·5.0~6.0제곱미터 이하 ·6.1~7.0제곱미터 이하 ·7.1~9.0제곱미터 이하 ·8.1~9.0제곱미터 이하 ·9.1~10제곱미터 미만	·50만원 이상 100만원 미만	55만원 65만원 75만원 85만원 95만원
다. 연면적 10제곱미터 이상 20제곱미터 미만 ·10.0~12.0제곱미터 이하 ·12.1~14.0제곱미터 이하 ·14.1~16.0제곱미터 이하 ·16.1~18.0제곱미터 이하 ·18.1~20.0제곱미터 미만	·100만원 이상 200만원 미만	110만원 130만원 150만원 170만원 190만원
라. 연면적 20제곱미터 이상 50제곱미터 미만 ·20.0~25.0제곱미터 이하 ·21.1~30.0제곱미터 이하 ·30.1~35.0제곱미터 이하 ·35.1~40.0제곱미터 이하 ·40.1~45.0제곱미터 이하 ·45.1~50.0제곱미터 미만	·200만원 이상 300만원 미만	210만원 230만원 245만원 260만원 280만원 290만원
마. 연면적 50제곱미터 이상	·300만원에 50제곱미터 초과 면적의 1제곱미터당 9만원을 가산한 금액	300만원 +9만원
5. 선전탑, 아취광고물, 공중에 띄우는 애드벌룬		
가. 선전탑, 아취광고물 ·연면적 5제곱미터 이하 ·연면적 6~10제곱미터 이하 ·연면적 11~15제곱미터 이하 ·연면적 15~20제곱미터 이하 ·연면적 21제곱미터 이상	·30만원 이상 100만원 이하	40만원 50만원 60만원 70만원 70만원 +1㎡당5만원
나. 공중에 띄우는 애드벌룬 ·애드벌룬(공) 1개 ·애드벌룬(공) 2개 ·애드벌룬(공) 3개 이상	·30만원 이상 100만원 이하	40만원 60만원 80만원 +1개당5만원

위 반 사 항	이 행 강 제 금	금 액
<p>6. 공공시설물이용 광고물</p> <p>가. 시계탑조명탑안내탑일기예보탑                      ·연면적 5제곱미터이하                      ·연면적 6~10제곱미터이하                      ·연면적 11~15제곱미터이하                      ·연면적 16~20제곱미터이하                      ·연면적 21제곱미터이상</p> <p>나. 교통안내소                      다. 안내계시판지정벽보판버스승강장                      시승강장판광안내도</p> <p>라. 제26조제1항제5호의 규정에 의하여                      도지사가 인정한 편의시설물</p> <p>마. 가목 내지 라목외의 공공 시설물                      ·연면적 5제곱미터이하                      ·연면적 6~10제곱미터이하                      ·연면적 11~15제곱미터이하                      ·연면적 16제곱미터이상</p>	<p>·30만원 이상 100만원 이하</p> <p>·가로형간판에 준함                      택·지주이용간판에 준함</p> <p>·유사한 유형의 광고물                      시·준함</p> <p>·20만원 이상 50만원 미만</p>	<p>40만원                      50만원                      60만원                      70만원                      80만원                      +1㎡당5만원</p> <p>등에</p> <p>25만원                      30만원                      35만원                      36만원                      +1㎡당5만원</p>
<p>7. 교통시설이용 광고물</p>	<p>·유사한 유형의 광고물등에</p>	<p>준함</p>
<p>8. 교통수단이용 광고물</p> <p>가. 비행선</p> <p>(1) 무인 비행선                      ·연면적 10제곱미터이하                      ·연면적 11제곱미터이상</p> <p>(2) 유인 비행선                      ·연면적 10제곱미터이하                      ·연면적 11제곱미터이상</p>	<p>·100만원 이상 500만원 이하</p> <p>·100만원 이상 500만원 이하</p>	<p>150만원                      150만원                      +1㎡당10만원</p> <p>200만원                      200만원                      +1㎡당10만원</p>

위 반 사 항	이 행 강 제 금	금 액
나. 그밖의 교통수단		
(1) 연면적 3제곱미터미만	· 10만원 이상 30만원 미만	
- 1.0제곱미터이하		10만원
- 1.0 ~ 2.0제곱미터이하		20만원
- 2.1 ~ 3.0제곱미터미만		29만원
(2) 연면적 3제곱미터이상 5제곱미터미만	· 30만원 이상 50만원 미만	
- 3.0 ~ 4.0제곱미터이하		35만원
- 4.1 ~ 5.0제곱미터미만		45만원
(3) 연면적 5제곱미터이상	· 50만원에 5제곱미터 초과면적의 1제곱미터당 4만원을 가산한 금액	50만원 + 4만원
9. 그밖의 유형의 광고물	· 가로형 간판에 준한다	

※ 이행강제금 부과금액의 계산방법

- (1) 이행강제금 산정은 광고물의 표시면적을 기준으로 하되, 지주는 제외하고 게시물(광고물의 테두리)의 면적은 포함한다.
- (2) 광고물의 표시면적 산정시 소수점 2자리 이하는 절사한다.
- (3) 입체형·모형등 변형된 광고물의 표시면적 산정은 최대 외각선을 사각형으로 가상연결한 면적 또는 단면적의 70퍼센트에 면수를 적용한다.
- (4) 전기를 이용하는 광고물등중 백열등 또는 형광등을 이용하여 단순조명을 하는 광고물등은 해당 이행강제금의 1.5배를 적용하고, 네온류 또는 전광류등을 이용하여 표시한 광고물등은 해당 이행강제금의 2배를 적용한다. 다만, 광고물등의 일부가 전기를 이용하는 경우에는 이행강제금 산정금액에 전기이용 부분의 비율에 해당하는 금액을 가산한다.
- (5) 이행강제금을 반복하여 부과하는 경우에는 500만원이하의 범위안에서 직전 이행강제금 부과금액의 30퍼센트를 가산하여 부과할 수 있다.

【별지 제1호 서식】



○ 현 수 막 : 지름 7센티미터이상

○ 벽보·전단 : 지름 5센티미터이내

※ 다만, 천공의 방법인 경우에는 이를 변형하여 적용할 수 있다.





<뒷면>

검사항목		검사내용 및 기준	검사결과
기본사항		설계도서 및 허가사항의 일치여부(시설·구조·규격·내용 등의 무단변경 등)	
법규		각종 법규 및 고시·명령 위반행위	
사용자재		부식방지의 자재 사용 또는 도장시공	
		국가·공공기관에 의한 공인 규격품 및 자재의 사용 여부	
		철근, 앵커볼트, 골조 등 주요구조부 사용자재의 규격, 밀도, 배치상태 등	
접합부위	기초부분	콘크리트 기초 표면의 적정경사, 노화, 균열, 변형 등 적합성 및 접합상태	
		접합부분 건물의 강도 확보 : 건물의 균열, 파손, 변형 등(하중, 풍압력 등 고려)	
	구성자재	접합상태, 볼트·리벳·너트 등의 풀림, 마모 등	
		변형, 휨, 균열, 이탈, 파손, 부식 여부 등	
용접상태	균열, 변형, 부식, 틈 발생 등		
전기설비		배선상태 : 적정용량, 과열, 오손, 파손, 노후, 노출 등	
		애자 연결부위 등 각종 자재의 상태	
		「전기용품 안전관리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한 안전인증대상전기용품의 경우 안전인증을 받은 전기자재사용여부 또는 「산업표준화법」에 의하여 한국산업규격의 표시인증을 받은 제품사용 여부, 피뢰시설의 적정 설치 및 유지 등	
통행		교통신호기, 교통안전표지, 도로표지 등의 기능 장애 사항	
		차량 및 보행자의 통행 장애	
천재지변, 인위적 상황 변동 후의 점검사항		강풍·폭우·폭설후, 폭발·충격후	
기타		그 밖에 안전·미관·생활환경·지해여부 및 광고물 퇴색여부 등	





【별지 제6호 서식】

제 호  <b>옥외광고물등안전도검사업무위탁지정서</b>			
수 탁 자	① 성 명		② 주민등록번호
	③ 업소명 (단체명)		
	④ 주 소		
⑤ 영업장소제지			
⑥ 위 탁 기 간		20 . . . . ~ 20 . . . . ( 년 월)	
<p>「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시행령」 제40조 및 제천시 옥외광고물 등 관리조례 제27조제4항의 규정에 의 하여 위와 같이 안전도검사업무를 위탁합니다.</p> <p style="text-align: center;">년    월    일</p> <p style="text-align: center;">제 천 시 장            인</p>			

210mm×297mm(신문용지 64g/m<sup>2</sup>)

【별지 제7호 서식】

- 규 격 : 가로 6cm × 세로 8cm
- 바탕색 : 연녹색
- 글 자 : 검정색

<전 면>

옥외광고물 안전도  
검 사 원 증

사 진  
(3.5×4.5)

제 천 시

<후 면>

소 속 :  
지 위 :  
성 명 :  
주민등록번호 :

자 격 기 한( 20 . . . . ~ 20 . . . . )

「옥외광고 물 등관리법」 제9조의 규정  
에 의한 안전도검사자임을 증명함

년 월 일

제 천 시 장 (인)



【별지 제9호 서식】

<b>광고물 등 청구 및 인수증</b>				
청 구 인	①성 명		②주민등록번호	
	③주 소			
④광고물등 종류			⑤수 량	
⑥광 고 내 용				
위의 광고물등을 청구합니다.  년      월      일 청구인                      (서명 또는 인)  재천시장 귀하				
<b>광고물 등 인수증</b>				
인 수 인	①성 명		②주민등록번호	
	③주 소			
④광고물등 종류			⑤수 량	
⑥광 고 내 용				
위의 광고물등을 인수합니다.  년      월      일 인수인                      (서명 또는 인)  재천시장 귀하				

210mm×297mm 보존용지(2종) 70g/m<sup>2</sup>

【별지 제10호 서식】 삭제

【별지 제11호 서식】

제 호  <b>옥외광고업종사자교육수료필증</b>	
① 교육 과정명	
② 교육수료일자	
수 강 자	③ 성 명
	④ 소 속 업 소 명
<p>「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시행령」 제42조 및 제천시 옥외광고물 등 관리조례 제33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옥외광고물등에 관한 교육을 위와 같이 수료하였음을 확인합니다.</p> <p style="text-align: center; margin-top: 20px;">년 월 일</p> <p style="text-align: center; margin-top: 20px;">제 천 시 장 인</p>	

210mm×297mm 인쇄용지(복합) 70g/㎡

【별지 제12호 서식】

옥 외 광고업 종사자 교육 이수대장

① 연번	② 교 육 과정명	③ 교 육 수료일자	④ 소 속 업소명	⑤ 성 명	⑥ 주민등록 번호	비 고

210mm×297mm 인쇄용지(복합) 60g/m<sup>2</sup>





【별지 제15호 서식】

제 호  <b>옥외광고업종사자 교육위탁지정서</b>			
수 탁 자	①성 명		②주민등록번호
	③업 소 명 (단체명)		
	④주 소		
⑤영업장 소재지			
⑥위 탁 기 간		20 . . . . ~ 20 . . . . ( 년 월)	
<p>「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시행령」 제43조 및 제천시 옥외광고물 등 관리조례 제3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옥외광고물등에 관한 교육을 위탁합니다.</p> <p style="text-align: center;">년 월 일</p> <p style="text-align: center;">제 천 시 장 인</p>			

210mm×297mm 인쇄용지(복합) 120g/m<sup>2</sup>

신 · 구조 문 대 비 표

현 행	개 정 안
<p><u>제32조(옥외광고업의 신고) ① 시장은 영 제41조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옥외광고업의 신고 또는 변경신고를 수리한 때에는 영 제41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옥외광고업자 관리대장에 이를 기록·관리하여야 한다.</u></p> <p><u>②옥외광고업자는 영 제41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옥외광고업신고필증을 분실 또는 훼손하였을 때에는 별지 제10호 서식의 옥외광고업 신고필증 재교부 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u></p>	<p><u>제32조(옥외광고업의 등록 기준 등) ① 법 제11조제1항 전단 및 시행령 제41조제1항에 의하여 옥외광고업을 하고자 하는 자는 별표 1의 2에 의한 시설 기준을 갖추어야 한다</u></p> <p><u>②시장은 영 제41조제2항 및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옥외광고업의 등록 또는 변경등록을 수리한 때에는 영제 41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옥외광고업자 관리대장에 이를 기록·관리하여야 한다.</u></p>

##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 2006.8.4 대통령령 제19639호]

- 제41조 (옥외광고업의 등록기준 등)** ①법 제11조제1항 전단에 따른 옥외광고업의 기술능력 및 시설기준은 별표 2의2와 같다. 다만, 영업내용 및 지역특성 등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당해 시·군·구의 조례로 별표 2의2의 시설기준을 강화하여 정할 수 있다.
- ②법 제11조제1항 전단에 따라 옥외광고업의 등록을 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6호서식의 등록신청서에 별표 2의2에 따른 기술자격취득자의 자격증 사본을 첨부하여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③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제2항에 따른 등록신청을 받은 때에는 신청자가 법 제11조의2의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기술능력 및 시설이 별표 2의2의 기준에 적합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7호서식의 옥외광고업등록증을 신청인에게 교부하여야 하며, 옥외광고업자는 이를 영업장 안에 게시하여야 한다.
- ④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제3항에 따라 등록증을 교부한 때에는 이를 별지 제9호서식의 옥외광고업자관리대장에 기재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 ⑤법 제11조제1항 후단에 따라 변경등록을 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8호서식의 변경등록신청서에 옥외광고업등록증을 첨부하여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⑥제3항에 따라 교부받은 등록증을 잃어버리거나 등록증이 못쓰게 되어 등록증을 다시 교부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8호의2서식의 재교부신청서에 등록증(등록증을 잃어버린 경우를 제외한다)을 첨부하여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⑦법 제11조제2항에 따라 옥외광고업의 휴업·폐업 또는 재개업에 관한 신고를 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6호서식의 신고서를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휴업·폐업 신고시에는 옥외광고업등록증을, 재개업 신고시에는 별표 2의2에 따른 기술자격취득자의 자격증 사본을 첨부하여야 한다.

⑧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제5항 또는 제7항에 따른 변경등록신청 또는 재개업 신고를 받거나 제6항에 따른 재교부 신청을 받은 때에는 옥외광고업등록증을 다시 교부하여야 한다.

[별표 2의2] <신설 2006.6.23>

옥외광고업의 기술능력 및 시설기준(제41조제1항관련)

기술능력	시설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광고도장기능사·컴퓨터그래픽스운용기능사·전기공사기사·전기공사산업기사 또는 「자격기본법」 제19조에 따라 공인받은 옥외광고사 2급 이상 기술자격취득자 중 1인 이상	사무실을 포함한 연면적 9.9제곱미터 이상의 작업장(옥외광고를 대행하는 영업만을 하는 경우에는 연면적 6.6제곱미터 이상의 사무실로 이에 갈음할 수 있음)

비 고 : 위 표 중 기술자격취득자는 상시 근무하는 자이어야 한다.

변화와 실천으로 으뜸 행복을!



# 충청북도



수신자 수신자 참조  
(경유)

제목 시·군 옥외광고물등 관리조례 표준안 홍보

1. 행정자치부 주민제도팀-3812(2006. 6. 30)호의 이첩입니다.

2. 2006. 6. 23 개정·공포된 「옥외광고물등 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에 의한 옥외광고업의 등록에 필요한 시설기준의 강화 및 옥외광고업의 휴·폐업과 업무재개 미신고에 따른 과태료 부과기준을 시·군조례에 위임함에 따라 「시·군 옥외광고물등 관리조례 표준개정안」을 불임과 같이 이첩하오니,

2. 각 시·군에서는 불임 표준개정안을 참고하되, 법령의 위임 범위내에서 시·군별 여건에 따라 7월중에는 개정될 수 있도록 추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불임 : 시·군 옥외광고물등 관리조례 표준개정안 1부. 끝.

## 충청북도지



청주시장(건설과장), 충주시장(도로과장), 제천시( )영원군수(개발과장), 보은군수(건설과장), 옥천군수(건설과장), 영동군수(소도읍육성과장), 증평군수(건설교통과장), 진천군수(건설과장), 괴산군수(재난안전관리과장), 음성군수(지역개발과장), 단양군수(건설과장)

★지방행정주사보: 경선미 지방행정사무관 이주혁 지역개발과장 권결 06/30 권영욱

협조자

시행 지역개발과-6913 ( 2006.07.03. ) 접수 건축과-11290 ( 2006.07.03. )

우 360-765 충청북도 청주시 상당로 158(상당구 문화동 89) / http://www.cb21.net

전화 043) 220-4414 /전송 043) 220-4419 / best002@cb21.net / 공개

○○시 조례 제 호(※2006. 6. 30 현재)

○○시 옥외광고물등 관리조례 표준안

제31조(옥외광고업의 등록기준 등) ①법 제11조제1항 전단 및 시행령 제41조 제1항에 의하여 옥외광고업을 하고자 하는 자는 별표 1의2 에 의한 시설기준을 갖추어야 한다.

②시장은 영 제41조제2항 및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옥외광고업의 등록 또는 변경등록을 수리한 때에는 영 제41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옥외광고업자 관리대장에 이를 기록·관리하여야 한다.

【별표 1의 2】

옥외광고업의 시설기준 (제31조제1항 관련)

지 역	시설기준	
	옥외광고제작업	옥외광고대행업
전지역	사무실을 포함한 연면적9.9m <sup>2</sup> 이상의 작업장 확보	연면적6.6m <sup>2</sup> 이상의 사무실확보

【별표 5】

과태료 부과기준(제35조제1항관련)

위 반 사 항	과 태 료	사 구 지 역	군 지 역
1. 법 제3조의 규정에 위반하여 입간판·현수막·벽보·전단을 표시한 자			
가. 입간판			
(1) 도로(보도를 포함한다)에 설치한 경우			
(가) 연면적 1제곱미터 미만	·5만원 이상 20만원 미만	8만원 13만원 19만원	7만원 10만원 15만원
- 0.5제곱미터 이하			
- 0.6 ~ 0.8제곱미터 이하			
- 0.9 ~ 1.0제곱미터 미만			
(나) 연면적 1제곱미터 이상 2제곱미터 미만	·20만원 이상 40만원 미만	25만원 30만원 39만원	20만원 25만원 35만원
- 1.0 ~ 1.3제곱미터 이하			
- 1.4 ~ 1.6제곱미터 이하			
- 1.7 ~ 2.0제곱미터 미만			
(다) 연면적 2제곱미터 이상 3제곱미터 미만	·40만원 이상 80만원 미만	45만원 60만원 79만원	40만원 55만원 70만원
- 2.0 ~ 2.3제곱미터 이하			
- 2.4 ~ 2.6제곱미터 이하			
- 2.7 ~ 3.0제곱미터 미만			
(라) 연면적 3제곱미터 이상	·80만원에 3제곱미터 초과면 적의 0.5제곱미터당 10만원을 가산한 금액 이하	80만원 + 10만원	80만원 + 10만원
(2) 그밖의 지역·장소에 설치한 경우			
(가) 연면적 1제곱미터 미만	·3만원 이상 10만원 미만	5만원 7만원 9만원	4만원 6만원 8만원
- 0.5제곱미터 이하			
- 0.6 ~ 0.8제곱미터 이하			
- 0.9 ~ 1.0제곱미터 미만			
(나) 연면적 1제곱미터 이상 2제곱미터 미만	·10만원 이상 30만원 미만	15만원 20만원 29만원	10만원 15만원 25만원
- 1.0 ~ 1.3제곱미터 이하			
- 1.4 ~ 1.6제곱미터 이하			
- 1.7 ~ 2.0제곱미터 미만			
(다) 연면적 2제곱미터 이상 3제곱미터 미만	·30만원 이상 50만원 미만	35만원 40만원 49만원	30만원 35만원 45만원
- 2.0 ~ 2.3제곱미터 이하			
- 2.4 ~ 2.6제곱미터 이하			
- 2.7 ~ 3.0제곱미터 미만			
(라) 연면적 3제곱미터 이상	·50만원에 3제곱미터 초과면 적의 0.5제곱미터당 5만원을 가산한 금액 이하	50만원 + 5만원	50만원 + 5만원

위 반 사 항	과 태 료	사구지역	군지역
<b>나. 현수막</b>			
(1) 벽면이용 현수막의 경우			
(가) 면적 3제곱미터 미만	·5만원 이상 10만원 미만		
- 1.0제곱미터 이하		5만원	5만원
- 1.1~2.0제곱미터 이하		7만원	7만원
- 2.1~3.0제곱미터 미만		9만원	8만원
(나) 면적 3제곱미터 이상 5제곱미터 미만	·10만원 이상 20만원 미만		
- 3.0~3.7제곱미터 이하		13만원	10만원
- 3.8~4.4제곱미터 이하		15만원	13만원
- 4.5~5.0제곱미터 미만		19만원	15만원
(다) 면적 5제곱미터 이상 10제곱미터 미만	·20만원 이상 50만원 미만		
- 5.0~6.0제곱미터 이하		25만원	20만원
- 6.1~8.0제곱미터 이하		35만원	30만원
- 8.1~10.0제곱미터 미		45만원	35만원
만 (라) 면적 10제곱미터 이상	·50만원에 10제곱미터 초과면	50만원	50만원
	적의 1제곱미터당 10만원을	+ 10만원	+ 10만원
	가산한 금액 이하		
(2) 지주지정계시대이용 현수막의 경우			
(가) 연면적 3제곱미터 미만	·5만원 이상 10만원 미만		
- 1.0제곱미터 이하		5만원	5만원
- 1.1~2.0제곱미터 이하		7만원	7만원
- 2.1~3.0제곱미터 미만		9만원	8만원
(나) 연면적 3제곱미터 이상 5제곱미터 미만	·10만원 이상 20만원 미만		
- 3.0~3.7제곱미터 이하		13만원	10만원
- 3.8~4.4제곱미터 이하		15만원	13만원
- 4.5~5.0제곱미터 미만		19만원	15만원
(다) 연면적 5제곱미터 이상 10제곱미터 미만	·20만원 이상 50만원 미만		
- 5.0~6.0제곱미터 이하		25만원	20만원
- 6.1~8.0제곱미터 이하		35만원	30만원
- 8.1~10.0제곱미터 미		45만원	35만원
만 (라) 연면적 10제곱미터 이상	·50만원에 10제곱미터 초과면	50만원	50만원
	적의 1제곱미터당 10만원을	+ 10만원	+ 10만원
	가산한 금액 이하		
(3) 그 밖의 종류의 현수막의 경우			
(가) 면적 3제곱미터 미만	·5만원 이상 10만원 미만		
- 1.0제곱미터 이하		5만원	5만원
- 1.1~2.0제곱미터 이하		7만원	7만원
- 2.1~3.0제곱미터 미만		9만원	8만원

위 반 사 항	과 태 료	사 구 지 역	군 지 역
(나) 면적 3제곱미터 이상 5제곱미터 미만 - 3.0~3.7제곱미터 이하 - 3.8~4.4제곱미터 이하 - 4.5~5.0제곱미터 미만	10만원 이상 20만원 미만	12만원 15만원 18만원	10만원 14만원 16만원
(다) 면적 5제곱미터 이상 10제곱미터 미만 - 5.0~6.0제곱미터 이하 - 6.1~8.0제곱미터 이하 - 8.1~10.0제곱미터 미	20만원 이상 50만원 미만	25만원 35만원 45만원	20만원 30만원 35만원
만 (라) 면적 10제곱미터 이상	50만원에 10제곱미터 초과면 적의 1제곱미터당 10만원을 가산한 금액 이하	50만원 + 10만원	50만원 + 10만원
(4) (1) 내지 (3)의 현수막을 설치하여 차량통행이나 일반 인의 보행을 현저히 방해한 때	해당 과태료의 2배까지 증가		
다. 벽보 (1) 일반 광고내용 - 1~10장이하 - 11~20장이하 - 21장이상 (2) 법 제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광고내용 - 1~10장이하 - 11~20장이하 - 21장이상	장당 5천원 이상 3만원 이하	장당10천 원 장당15천 원 장당25천 원 장당15천 원 장당20천 원 장당30천 원	장당10천 원 장당13천 원 장당20천 원 장당10천 원 장당18천 원 장당22천 원
라. 전단 (1) 일반 광고내용 - 1~10장이하 - 11~20장이하 - 21장이상 (2) 법 제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광고내용 - 1~10장이하 - 11~20장이하 - 21장이상	장당 3천원 이상 3만원 이하	장당5천원 장당10천 원 장당15천 원 장당15천 원 장당20천 원 장당30천 원	장당5천원 장당8천원 장당10천 원 장당10천 원 장당18천 원 장당22천 원

위 반 사 항	과 태 료	사구지역	군지역
2. 법 제11조제2항에 따른 옥외광고업의 휴·폐업 또는 업무재개에 관한 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			
가. 30일미만	·10만원 이상 30만원 미만	15만원	10만원
나. 30일이상 90일미만	·30만원 이상 50만원 미만	40만원	30만원
다. 90일이상 180일미만	·50만원 이상 100만원 미만	70만원	50만원
라. 180일이상 1년미만	·100만원 이상 200만원 미만	130만원	100만원
마. 1년이상	·200만원 이상 300만원 이하	240만원	200만원
3. 법 제12조제2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교육을 이수하지 아니한 자			
가. 연 1회 위반자	·10만원 이상 30만원 미만	25만원	25만원
나. 연 2회 위반자	·30만원 이상 50만원 미만	45만원	45만원
다. 연 3회 이상 위반자	·50만원 이상 100만원 이하	100만원	100만원

※ 과태료 금액의 계산방법

- (1) 과태료 산정은 광고물의 표시면적을 기준으로 하되, 지주는 제외하고 게시틀(광고물의 테두리)의 면적은 포함한다.
- (2) 광고물의 표시면적 산정은 소수점이하까지 계산하되, 계산된 총금액에서 1천원 미만은 절사한다.
- (3) 입체형·모형 등 변형된 광고물의 표시면적 산정은 최대외각선을 사각형으로 가상연결한 면적 또는 단면적의 70퍼센트에 면수를 적용한다.
- (4) 입간판중 전기를 이용하여 단순조명을 하는 광고물등은 해당 과태료의 1.5배를 적용하고, 네온류 또는 전광류 등을 이용하여 표시한 광고물등은 해당 과태료의 2배를 적용한다. 다만, 광고물등의 일부가 전기를 이용하는 경우에는 과태료 산정금액에 전기이용 부분의 비율에 해당하는 금액을 가산한다.
- (5) 최초 1년 이내에 반복·상습적으로 법을 위반하여 광고물등을 표시한 자에 대하여는 300만원이하의 범위 안에서 직전 과태료 부과금액의 30퍼센트를 가산하여 부과할 수 있다.

제600호

제 천 시 보

2006. 7. 14(금)

입 법 예 고

제천시공고 제2006-1063호

제천시 옥외광고물등관리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행정절차법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그 내용과 취지를 미리 알려 시민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6년 7월 14일  
제 천 시 장

제천시 옥외광고물 등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법예고

1. 조례명 : 제천시 옥외광고물 등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개정취지

- 2006. 6. 23일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시행령』의 일부 개정·공포됨에 따라 옥외광고업이 신고제에서 등록제로 전환됨에 따라 옥외광고업의 등록에 필요한 시설기준의 제시
- 옥외광고업의 휴·폐업과 업무 재개에 대한 과태료 부과 기준을 시군조례로 정하도록 위임함에 따라 관련 조례를 개정하고자 함

3. 주요 개정 내용

- 제2조(옥외광고업의 등록 기준 등)

4. 의견제출

이 조례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나 개인은 2006년 8월 4일까지 제천시장(참조:건축과장)에게 서면으로 의견을 제출하거나 전화로 알려 주시기 바랍니다.

(연락처 ☎ : 043-640-5515 FAX 640-5869)

-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여부와 그 사유)
-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전화번호, 주소
- 기타 참고사항

No. 246

작성자 건축과 작성일 2006-07-16 조회 26

제목 제천시 옥외광고물등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첨부파일 첨부파일 1개(다운로드 12건) ↓스크랩

제천시공고 제 2006 -1063

제천시 옥외광고물등관리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행정절차법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그 내용과 취지를 미리 알려 시민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6년 7 월 14 일

제 천 시 장

제천시 옥외광고물 등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법예고

1. 조례명 : 제천시 옥외광고물 등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개정취지
  - 2006. 6. 23일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시행령」의 일부 개정, 공포됨에 따라 옥외광고업이 신고제에서 등록제로 전환됨에 따라 옥외광고업의 등록에 필요한 시설기준의 제시
  - 옥외광고업의 휴·폐업과 업무 재개에 대한 과태료 부과 기준을 시군소래로 정하도록 위임함에 따라 관련 조례를 개정하고자 함
3. 주요 개정 내용
  - 제2조(옥외광고업의 등록 기준 등)
4. 의견제출
 

이 조례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나 개인은 2006년 8월 4일까지 제천시청(참조:건축과장)에게 서면으로 의견을 제출하거나 전화로 알려 주시기 바랍니다.

(연락처 ☎ : 043-640-5515 FAX 640-5869)

  -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여부와 그 사유)
  -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전화번호, 주소
  - 기타 참고사항

◇ 목록